

인감증명서 발급사실 확인용 번호	-	-
신청인: (생년월일:)	담당자: (전화:)	

※ 이 용지는 위조식별표시가 되어 있음

주민등록번호	-				인 감 증 명 서		본인	대리인
성명 (한자)	()				인감			
국적								
주소								
용 도	매 도 용	[] 부동산 매수자, [] 자동차 매수자						
		성명 (법인명)				주민등록번호 (법인등록번호)	-	
		주소 (법인·사업장 소재지)						
	일 반 용	위의 기재사항을 확인합니다. (발급신청자) (서명)						
비고								
<p>1. 인감증명서 발급사실통보서비스를 신청하면 발급 사실을 휴대폰 문자로 즉시 통보받을 수 있습니다.</p> <p>2. 인감증명서 발급 신청인이 본인인 경우에는 본인란에,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리인란에 ○표시됩니다.</p> <p>3. 주민등록번호란에는 미주민등록 재외국민의 경우 여권번호, 국내거소신고자의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,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하며,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경우 그 아래에 ()를 하고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할 수 있습니다.</p> <p>4. 민원인이 요청하는 경우 주소이동사항을 포함하여 발급합니다.</p> <p>5. 부동산 또는 자동차(「자동차관리법」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를 말합니다) 매도용으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매수자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, 주소를 확인하고 서명하여야 합니다. 다만, 부동산 또는 자동차 매도용 외의 경우에는 "빈칸"으로 표시됩니다.</p> <p>6. 용도의 일반용란은 '은행대출용', '○○은행의 대출용으로만 사용' 등 자유롭게 기재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피한정후견인의 인감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이 신청인에게 구체적인 용도를 확인하여 직접 기재하여 발급하여야 합니다.</p> <p>7. 매수자가 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를 작성하되, 주소는 사업장소재지를 기재합니다.</p> <p>8. 미성년자, 피한정후견인, 피성년후견인의 표시와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, 한정후견인, 성년후견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의 기재는 비고란에 합니다. 비고란은 개명한 사람인 경우 개명 전 성명 등 민원인 요청사항을 기재하면 됩니다.</p> <p>9. 인감증명서의 발급사실은 전자민원창구(www.minwon.go.kr)를 통하여 「발급일, 인감증명 발급사실 확인용 번호, 주민등록번호, 발급기관」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.</p> <p>10.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미리 신고해야 하는 불편없이 전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바로 발급이 가능한 편리한 제도입니다.</p>								
발급번호	위 인감은 신고되어 있는 인감임을 증명합니다.							
년 월 일								
○○시·군·구·읍·면·동장 또는 출장소장 직인								